

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확대 관련 심사지침

1 출원인 적격 인정범위

-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 이외의 다른 자(판매·유통업자 등)가 포함되어 있어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

-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판매·유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음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명성이 있는 지역특산품을 상표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생산·제조·가공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 통지

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자의 범위 규정

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와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구성원들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 단체의 구성원이더라도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없음
 -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로부터 하여금 출처 및 품질 오인·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에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

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권한에 관한 내용의 정관 기재
 -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의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자와 생산·제조·가공을 하지 않는 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
 - 해당 단체의 정관에 단체표장권자 및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하는 구성원이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,
 - 단체 구성원 중 판매자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에만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함
 - 해당 단체의 정관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절이유 통지